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

차례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	5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6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기업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7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8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9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10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11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12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3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	 14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14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15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17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18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	 20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0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21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22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23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24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 **25**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5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6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27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28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29**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9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30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32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 **33**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33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35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 **37**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37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39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 **40**

1.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40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41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42**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42**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44**
3.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45**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 **46**

1.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46**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47**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 **48**

민생 분야 입법 과제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 개요

전월세난 해소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 도입

2) 배경과 이유

전월세 문제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여 집 없는 서민·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무리한 대출을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만 몰두하고 있음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현재 참여연대와 박영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의안번호 1900027)이 법사위에 계류 중

3) 주요 내용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을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임차인이 제7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 제2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2항 신설)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1) 개요

중소기업·중소상인의 근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사업 진출 규제와 사업 이양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

2) 배경과 이유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남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

현재 참여연대와 오영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오영식, 의안번호 1904681)이 산자위에 계류 중

3) 주요 내용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중소기업청장은 관련 사업 분야 등을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고(안 제6조),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안 제7조)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소관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기업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1) 개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입지·진출을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2) 배경과 이유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성 시가지 지역 상권을 위축·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최근 문제가 되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 입지설정이 이루어지고, 건축단계를 거친 이후라 등록단계에서 진출 여부를 규제하는 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참여연대가 신기남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의안번호 1916940)이 산자위에 계류 중

3) 주요 내용

상업지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는 건축할 수 없음.

대규모 점포의 건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매출액 영향평가)을 고려해야 함.

매출액 영향평가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될 경우 대규모 점포의 용도, 면적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이상 제762조의2 '상업지역 내 대규모점포 건축의 특례' 신설)

4) 소관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1) 개요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등과 재벌·대기업과의 집단교섭, 상생협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

2) 배경과 이유

남양유업 사태 등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대리점 본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실효적인 규제를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함

현재 참여연대가 이종걸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의안번호 1905018)이 정무위에 계류 중

3) 주요 내용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사업자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기재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2항)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를 금지(안 제13조)

대리점 사업자 단체의 구성을 허용(안 제14조제1항)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 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3%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30조), 대리점 본사가 구입 강제행위,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제공행위, 부당반품금지행위를 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액의 최대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0조)

4)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1) 개요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와 담합 및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함

2) 배경과 이유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광범위하고 대규모이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 피해를 구제받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음.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 1인이라도 전체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전은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는 내용으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

현재 참여연대가 서영교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의안번호 1909266)이 법사위에 계류 중

3) 주요 내용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

소비자집단소송의 대상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조물피해, 담합피해, 개인정보유출피해, 부당약관피해,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피해,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로 인한 피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의 피해로 함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총원'이라 부르고 개개인을 '구성원'이라 하며 구성원이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구성원이 승소 또는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범위의 총원에게 미침. 기업의 손해배상액을 분배 법원이 받아 총원에게 분배하게 됨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1) 개요

건물주에 대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함

2) 배경과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가 비현실적으로 좁아서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부심권의 상가임대차계약자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OECD 국가들은 상가임차인들에게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이 큼. 이들 국가들의 경우 법정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전비용, 영업개시 지원금, 임대료 차액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참여연대가 서영교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의안번호 1912516)이 법사위에 계류 중

3) 주요 내용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 ①항 단서 삭제, ③항 삭제, 제10조의 2 삭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 ②항)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거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퇴거 보상 제도를 도입(안 제10조의3)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1) 개요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행성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함

2) 배경과 이유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의 초대형 사행산업영업장이지만 학교로부터 232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용산 화상경마장 같이 대규모 사행성 시설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주거 밀집지역이며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전자상가가 인근에 있어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현재 참여연대가 김태년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의안번호 1911520)이 교문위에 계류 중

3) 주요 내용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반경 200m)에 해당되지 않아도, 학교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4) 소관 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

1) 개요

분리공시제와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 차별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휴대폰 가격거품을 없애고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함

2) 배경과 이유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자 만든 법임. 그러나 시행 이후 최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고, 통신비는 거의 인하되지 않았음.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는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과 단말기 고객에게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시행할 경우, 가격 거품 수준이 드러나게 됨. 애초 분리공시제가 시행령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이에 분리공시제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 가격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높이 책정되어 있음. 외국에 비해 국내 판매가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함

현재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청원번호 1900166, 우상호의원 소개)한 법안이 미방위에 계류 중. 비슷한 취지의 의원 발의안도 다수 계류 중임.

3) 주요 내용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함(안 제4조 제3항)

이동통신사업자가 감독기관에 제출·보관하는 자료 목록에 단말기 제조업자의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시켜서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안 제4조, 제12조)

외국에 비해 국내 단말기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의2)

4) 소관 상임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개요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미래부장관의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 도입 및 알뜰폰 요금 인하 방안 마련하여 국민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
2015년 10월 20일, 박근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인가제 폐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는 국회에서 반대해야 함.

2) 배경과 이유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SK텔레콤)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2005년 이후 인가신청 건수가 총 353건인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어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음.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해, 기본료를 별도로 부당히 징수할 수 없게 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해야 함

참여연대가 청원안도 제출했고, 참여연대 청원안에 기반해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안번호 1914647)은 현재 미방위 계류 중

3) 주요 내용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 기준을 신설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함(안 제28조, 제28조의2 신설),

박근혜 정부는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요금인가제를 오히려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이는 시장지배자인 SK텔레콤의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국회 상임위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꼭 반대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경제 분야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1) 개요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

2) 배경과 이유

재벌체제에서 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

2015년 여름 큰 파장을 몰고 온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나타난 재벌의 전근 대적인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의 개선이 절실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으나, 2013년 8월 재벌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재계의 반대 표명 이후, 법무부가 2013.7.17. 입법예고까지만 하고 법안 발의를 2년 넘게 미루고 있는 상태

3) 주요 내용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구축, 집중 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도입을 담음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재계가 외국인들에 의한 의사회 장악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이며, 독립적 기능을 해야 할 감사위원마저 총수일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현재 상황에서 최소한의 조치임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등에서는 미흡하나마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수용할 수 있음

그러나 다중대표소송제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 도입과, 적용대상 지분을 기준을 '지분을 50% 초과'의 모자회사 관계에서 '30%' 기준으로 완화할 필요

정부 입법예고안에 없는 내용으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제도 도입이 필요

4)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1) 개요

삼성의 지배구조 편의를 위해 왜곡돼 있는 보험사 자산운용 관련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함. 핵심은 현재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사 보유 계열사 유가증권의 평가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것임.

2) 배경과 이유

보험업법은 동일 개인이나 법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나 유가증권 취득에 한도를 정하고,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들이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에도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을 보험사 총자산의 3%로 제한함.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보험사 총자산(분모)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보유 유가증권(분자)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해, 보험사가 실제로는 3%를 훨씬 넘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감독규정 때문에 보험업법 자산운용규제의 취지를 벗어나 3%를 훨씬 넘는 계열사 유가증권을 보유한 보험사는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고, 결국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한 편의를 금융감독기구가 봐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4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1910100)을 발의했으나, 1년이나 지난 2015년 4월에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고, 금융위와 여당은 삼성의 주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법안 통과 반대 의사를 드러냄.

3) 주요 내용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보험업법 일부를 개정. 이는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일시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

을 통해 단계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른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 실효성 담보.

4)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1) 개요

건설하도급 시장에서 주로 원청인 대기업과 수급사업자인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함

2) 배경과 이유

건설하도급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청이 본 계약 이외 추가 공사나 작업을 지시하고도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 대금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대개 하청기업의 피해로 귀결.

입찰 과정이 불투명하여 단가 인하를 위한 원청의 편법 입찰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행위가 만연하며, 이행보증제도가 하청에 압박이 되어 원청의 부당한 위탁취소에도 하청이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

2014년 12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법안(의안번호 1913014) 발의 이후 소관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주요 4개 개정안 모두 통과가 어려운 상황

3) 주요 내용

공사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서면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그러한 서류의 미발급시 추가 공사 및 작업 변경에 따른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

수급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종료 즉시 입찰참가자에게 예정 가격, 최저가 입찰금액, 최저가 입찰자를 공개하도록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도급내역서 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에 포함시켜야 함

원청의 부당한 위탁 취소시에는 하청 기업이 제출한 이행보증서의 보증금 청구를 금지함

4)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1) 개요

공정거래사건에서 통상 신고인은 거래상 약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공정위에 어렵게 신고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가 낮아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고인의 지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배경과 이유

공정거래사건에서 공정위는 사건처리 기한을 규범력 있게 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재를 통한 피해 손해배상제도,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한 대위배상제도 등이 없어 피해 구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신고인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없고, 심사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의 조치의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또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이유로 한 잦은 심의절차 종료로 인해 신고인의 신고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음.

2015년 4월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안번호 1914646) 발의 이후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임.

3) 주요 내용

신고인에게 심사보고서와 의결 결과를 송달하고, 사업상 비밀보호사항에 대해서도 심리와 의결을 공개

조사 개시 후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하는 심의절차 종료를 금지하고,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인한 조사 중단도 금지

조사 착수 뒤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회에 한해 최대 2개월 연장, 장기조사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기한 특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기간 내 심사보고서 미제출시 신고인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 피해자가 3개월 안에 조사·심의절차를 마칠 것을 공정위에 신청하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 및 심의를 3개월 이내 끝낼 것을 결정, 이의 위반시 신고인 징계요구권 부여.

신고인에게 심사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 위원회 의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허용

중재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재 결과를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감면 가능,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대위소송제 도입.

4)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노동 분야 입법 과제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1) 개요

‘9·15노사정합의’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근로조건 후퇴가 우려되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됨

2) 주요 내용과 문제점

9·15노사정합의 관련 입법필요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힌 새누리당의 당론법안은 9·15노사정합의에서 벗어나거나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음.

개정안은 통상임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급여의 종류를 대통령령을 통해 규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 최대 노동시간은 주 68시간임.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으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일 수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 사실을 감추고 있으며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가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부담을 줄여주는 현행 행정해석을 입법화하기로 함.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1916864)은 근로시간 단축효과는 크지 않고, 초과노동 관련 근로조건의 후퇴가 우려되므로 폐기되어야 함.

통상임금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면, 개념적 혼란을 줄일 수 있으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후퇴하거나 정부의 개입여지를 둘 경우 근로조건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음. 급여는 사업장마다 고유한 맥락과 특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중요한 개념요소만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1주가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이라는 것은 법률 이전에 상식이며 구태여 법률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고용노동부가 1주일을 5일로 간주하는 기존의 입장을 상식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임.

3)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1) 개요

‘9·15노사정합의’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수급요건 강화·구직급여 하한액 인하 등 제도 전반의 후퇴를 야기하기 때문에 통과되어서는 안 됨

2)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정부·여당은 개정안을 통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의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수급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초래할 것임.

수급조건 강화에 따라 6만 여 명의 인원(정부추산)이 제도에서 배제되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약 70%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한액을 인하하면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됨. 지급기간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도 전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 우려되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1916865)은 폐기되어야 함.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수급조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축소해야 함.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고용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해야 함

또한 실업급여 제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1) 개요

‘9·15노사정합의’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됨

2) 주요 내용과 문제점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과 쪼개기 계약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예외조항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됨.

35세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연장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기간연장은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대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 등 정규직과의 차별이 없어야 함. 또한 「기간제법」을 회피하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1) 개요

‘9·15노사정합의’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견허용업종과 대상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통과되어서는 안 됨

2)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개정안은 도급과 파견 구별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판례보다 후퇴했고 개정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도급의 외양을 갖추는 방식으로 회피 가능.

개정안은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등에 대해 파견확대를 허용하도록 함. 파견허용업무의 확대는 찬성할 수 없으며,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 생산직에 파견을 확대하려는 편법으로 판단됨.

절대적 파견금지업무의 추가는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지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전 산업에 걸쳐 만연한 불법파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해야하며, 현재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파견판별지침’을 개정하여, 도급과 파견의 엄격한 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최소한 파견업종을 제한하고, 직접고용원칙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함.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1) 개요

‘9·15노사정합의’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산재 보상제도보다 후퇴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통과되어서는 안 됨

2) 주요 내용과 문제점

출·퇴근의 정의 부분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이미 산재로 인정받고 있는 영역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개정안 내용 중 현행 판례보다 후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해의 경우 보험급여를 감액하겠다는 내용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산재를 보상하는 기존 제도에 비취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음.

기존 제도보다 후퇴되거나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남용할 소지가 다분한 내용으로 구성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함.

3)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 개요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

2) 배경과 이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고 기관들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관리 감독 체계 부실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9919, 1905734, 1909833호)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3) 주요 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고(안 제38조 4항),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설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안 제6조의 2항). 또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와 인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함(안 제8조의 2항).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함(안 제35조의 2항).

4)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 개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함.

2) 배경과 이유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의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김성주 의원 등이 2012년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1280)은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에 있음.

3) 주요 내용

2016년 말까지 보험재정의 2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함(안108조제1항)

4)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3.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1) 개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형제복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2) 배경과 이유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감금되었던 인권유린사건임. 형제복지원의 폐쇄이후 513명의 사망자가 밝혀졌지만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생존자 및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금도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문제이기도 함.

진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178)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3) 주요 내용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

4) 소관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1) 개요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지역복지 침해 시도는 철회되어야 함.

2) 주요 내용과 문제점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는 정비방안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중 1,496개를 정비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음.

행정자치부는 최근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복지의 폐지, 축소를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지역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주민 동의 없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정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임. 사회서비스의 제공주체가 지자체임에도 중앙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향후 지역복지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임.

특히 정비방안의 주 대상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되어야 함.

3)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조세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1) 개요

국가 재정과 예산에 국민이 참여하고 위법·부당한 재정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2) 배경과 이유

자원외교의 사례와 같이 정책결정자들의 귀책사유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의 남용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제정이 필요함.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참여연대 등 국민소송법네트워크와 김현미·이상민 의원 공동으로 2014년 11월에 발의(의안번호 1912191)하였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3) 주요 내용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중지,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안 2조 1항)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며(안 8조),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은 피고적격을 가짐(안 9조)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중지청구 등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소송임(안 4조). 중지청구 등 소송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진행 중인 심히 부당한 재정정책결정 포함),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소송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대상으로 함(안 10조 1항)

이 법에 따른 소송에 의해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그 가액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의 한도에서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안 33조 1항)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 마련(안 36조)

4)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7056)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 개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현실에서 공평과세 및 복지재원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함.

2) 배경과 이유

대기업은 우수한 인적자본의 활용, 대규모의 연구개발지원금, 외평채를 이용한 환율방어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지만, 조세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특히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재벌 대기업일수록 낮음.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 역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2008년 이후 그 집중도가 심화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할 경우 이명박정부(2009~2012년)의 법인세 감세규모(지방세 포함)는 총 29.4조원으로 그 중 대기업이 74.5%를 차지함. 2013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4.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8.1%, 임시투자세액공제 84.3%, 외국납부세액공제 72.4%가 상위 1% 기업에 귀속되었음.

법인세 정상화와 감면혜택 정비에 관하여, 이낙연(의안번호 1901685), 박원석(의안번호 1900437)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1911403)등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3) 주요 내용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법인세법 55조 제 1항)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조세특례제한법 132조)

법인세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세수 효과 추정 (단위 : 억)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 수	증세 규모
100억~200억 이하	853	1,369
200억~500억 이하	496	3,413
500억~1,000억 이하	200	3,440
1,000억~5,000억이하	181	12,559
5,000억 초과	54	31,471
합계	1,784	52,252

참여연대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15년	참여연대 개편안
1,000억 원 초과	17%	20%
100억 초과-1,000억 원 이하	12%	15%
100억 원 이하	10%	10%
중소기업	7%	7%

4) 소관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7056)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1) 개요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명백한 실패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이 추가 투입될 우려가 있는 부실사업에 대해 세금 및 공적자금의 투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함.

2) 주요 내용과 문제점

자원외교 사업은 실제 '자원의 수급안정'이나 '비상시 안정적 자원 확보'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당초 예상치인 3조 1,531억 원의 적자를 뛰어넘어 12조 8,603억 원이 더 투입된 총체적인 실패·부실 사업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캐나다 하베스트 석유가스 사업 등은 이미 사업 준비시 부실한 검토로 인하여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임이 드러난 상태임.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부실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인 재정낭비를 막아야 함.

3) 소관상임위 : 산업자원통상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7056)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1) 개요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수 대폭 확대, 국회의원 정수 기준 법제화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함.

2) 배경과 이유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가 연동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다가, 비례대표 의석수도 총 300석 중 54석(18%)에 불과해 제도의 효과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함.

선거 때마다 1등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아 국회 의석 구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사표(死票)가 천만 표가 넘고 있음. 특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인해 거대 양당은 자신이 받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소수 정당은 반대의 경우가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됨.

이처럼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국회의 대표성은 매우 허약함. 유권자의 지지를 고르게 의석으로 전환하는 선거 제도가 필요하며, 적정한 의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도 법제화 할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를 비롯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청원안(청원번호1900192)을 제출한 바 있음

3) 주요 내용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 정당 투표에서 득표한 것에 비례해 각 정당에 총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그 중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을 도입함.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최소 2대 1로 함.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하여 산출하도록 함.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 수준으로 함.

4) 소관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1) 개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정당법」 상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시·도당을, 시도당별 당원 1천 명 이상을 가져야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민의 정치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2) 배경과 이유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을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엄격하게 규제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현행 정당법 상의 정당설립요건은,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 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3) 주요 내용

- ① 참정권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선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상의 독소조항들을 폐지·개정함.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제15조제1항)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제93조제1항)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제108조의2)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제251조)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제한함. (제230조제1항제1호)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한정함. (제254조제2항)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제272조의3)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함. (제155조제1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관련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청원번호 1900121)을 2013년 제출한 바 있음

- ②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하고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해 정당법 상의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함.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 완화함. (3조, 17조, 18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관련 내용의 정당법 개정 청원(청원번호 1900116)을 2013년 제출한 바 있음

4) 소관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사법/검찰 분야 입법 과제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1) 개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관할관 제도·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해야 함.

2) 배경과 이유

현재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확인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고, 재발 방지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는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감경권제도'는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임.

작년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군인권특위)'를 설치해 군사법제도를 포함한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제도들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군 사법체계 개선 차원에서 군사법원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 이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참여연대가 2014년 12월 제출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개혁 청원안(청원번호 1900157)을 비롯해 정청래, 이상민, 김광진, 이춘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 축소·은폐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국방부와 군은,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3) 주요 내용

사법권의 기본인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예하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화 해야 함(군사법원법 제6조).

지휘관의 의중에 종속되는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함(군사법원법 제22조 및 제24조)

사법권보다 지휘관의 지휘권을 우선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 함(군사법원법 제379조).

군인 범죄를 수사하는 군검찰관의 호칭을 군검사로 바꾸고, 군검사 임용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로 넓히되, 현직 장교는 전역 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군사법원법 제41조).

4)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건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개요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고, 청와대 근무 후 일정 기간 검사 임용을 제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함.

2) 배경과 이유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를 위해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이나 대통령실 직위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관련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 회부되어 있으나 법 개정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임.

3) 주요 내용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가졌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검사 재임용을 금지함(임내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3808), 검찰청법 제44조의2).

검사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실 근무를 제한하고, 대통령실 퇴직 후 1년간 검사 임용을 제한함(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4347), 검찰청법 제33조 제4호, 제44조의2).

대통령실 퇴직 후 3년 이내에 검사 재임용을 제한함(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6835), 검찰청법 제44조의2).

4)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1.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1) 개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조사)기간을 보장하고,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필요함

2) 배경과 이유

특조위와 유가족의 반대에도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제정을 강행하고, 예산을 늘장 배정하는 등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로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이 지연되었음.

정부가 제정한 위법적인 시행령은 특조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여 특별법의 취지와 특조위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3) 주요 내용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구성이후 최소 1년 6개월 이상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

법령에서 각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와 지휘·감독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지원 관련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진상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정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특조위의 규칙으로 위임하여, 당초 목적대로 포괄적인 재해·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특조위가 독립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특조위의 예산도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책정되어야 함.

유성엽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915680), 황주홍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916032)이 계류되어 있음

4) 소관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정책기획팀 (02-725-7105)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1) 개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대상기관의 범위와 신고 접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규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폭넓게 보호하도록 해야 함.

2) 배경과 이유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대상으로 정한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가 공식접수기관을 통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공익제보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사립학교의 경우 신고대상 기관에 속하지 않아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입시비리 등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못하며, 신고인도 보호 받지 못함.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제보한 경우에도 공식 접수기관을 통해 접수되는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함.

참여연대는 2013년 12월 12일 신고대상기관과 신고접수기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으며(의안번호 1900115, 이학영 의원 소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

3) 주요 내용

부패신고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맞추어 확대.(제2조 개정)

부패신고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추가)되던 것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조사기관), 수사기관, 부패행위자가 속한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국회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도입중인 익명제보시스템에 제보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인정하도록 해야 함(제55호 개정)

4)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제보지원센터(02-723-5302)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1) 개요

2015년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피해가 또 다시 지적된 만큼,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인 감독 및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등 전면적 개혁이 시급함

2) 배경과 이유

민간인 불법사찰, 간첩조작 사건에 이어 올해에는 국정원이 불법으로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법에서 규정한 정보수집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을 불법사찰한 정황까지 드러남. 국정원이 법적 제도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이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별도로 직접 수사,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법률상 업무범위가 상당부분 모호하며 법률에 기반 하지 않은 대통령령이나 규칙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개입 활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내국인 사찰과 같은 인권침해를 자행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기구가 이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행정부 내부나 사법부, 국회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임. 따라서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초당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

참여연대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13년 12월 23일 국정원 개혁 의견서를 국회 국정원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2014년 8월 19일에는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국정원 감독통제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음(청원번호 1900193, 신경민 의원 소개). 청원은 2015년 10월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임.

3)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해야함.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함.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함.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기능을 폐지해야함.

국가정보원의 감청 대상 및 집행 과정이 내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원과 국회에서 엄격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가정보원이 민주적 통제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정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1) 개요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 역시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2) 배경과 이유

미네르바사건, PD수첩사건, 최병성 목사 사건 등은 현행 「형법」 규정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부정책, 공직자 비리 및 기업비리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된 사례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표현에 대해서도 명예감을 훼손한다는 사유로 처벌하도록 하는 명예훼손죄 조항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뿐만 아니라 기사와 논평 또는 사설마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구인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자나 반대자를 기소하는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을 입막음하였음.

참여연대는 2012년 9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형법」 개정안을 청원함(청원번호 1900021).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의안번호 1900892)과 유승희 의원(의안번호 1908698)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계류 중임

3) 주요 내용

「형법」 제307조 1항의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는 현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

「형법」 제311조 모욕죄 폐지

4)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1) 개요

국가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가입자 정보수집제도 개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제도 개선, 감청제도 개선,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배경과 이유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 국정원의 해킹 의혹 등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개인 정보수집, 사이버사찰 등으로 통신과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불안이 커짐

수사기관에 의한 가입자 정보수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수한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가 법원의 통제도 받지 않고 수사기관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임. 또한 통신 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압수수색,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위치추적자료 수집 등에 대한 요건이 포괄적임. 집행 후 통지의 무 시기도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강창일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1902332 등), 서영교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1902392 등) 등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3) 주요 내용

수사기관의 가입자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장발부 등 법원의 통제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삭제하거나 법원허가 요건 추가. 가입자 정보가 제공된 후 즉시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조항신설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기지국수사제한), 허가 요건 강화, 통지의무 강화

감청의 경우 감청대상 등 허가요건 강화, 기간, 연장 횟수 제한, 통지의무 강화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의 요건강화, 통지의무 강화

위치추적자료 수집은 감청에 준하는 것으로 허가요건 강화

4) 소관상임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1. 위험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1) 개요

해외파병의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위험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조항을 담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함.

2) 주요 내용과 문제점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2013년 송영근 의원(의안번호 1905300)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해외파병법안은 각종 해외파견활동 ‘△다국적군 소속활동, △비분쟁지역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을 국군 해외파견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음. 해외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기존의 각종 위험적인 파병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국군의 활동 영역이 헌법에 명시된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벗어나는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안 제 2조의1)

다국적군 파병은 유엔 PKO에 해당하는 군이 아니며, 대표적인 사례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국내에 심각한 위험 논란을 일으켰음. UAE 파병 역시 상업적 목적의 파병으로 국회에서도 수차례 그 위험성을 지적했음. 또한 재난구호에의 군대투입에 대해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 국제사회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국회는 이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영해 국제연합(UN)이 요청하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국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군의 긴급구호 활동 기여가 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이외에 별도의 법을 새롭게 제정해야할 이유가 없음.

파병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제정에 앞서 그동안의 해외 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함.

3)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1) 개요

실효성 있는 인권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함.

2) 주요 내용과 문제점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심각한 인권실상에 대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높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시민,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권과 의료권, 교육권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음.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실효적인 인권 개선 효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임. 미국과 일본에서 과거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북한 인권 개선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1900058),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1910321)을 비롯해 다수의 제정안이 계류 중임. 지난 9월 7일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일부에 합의하고, 미타결쟁점에 대해서는 지도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황으로 알려짐.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상당수의 내용들은 이미 정부부처 및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임. 또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경우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을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북단체 지원을 위한 조항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함.

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과 기존의 남북간 합의 등 기존에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별도의 법 제정 없이도 정치적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음.

3) 소관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

1) 개요

군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군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군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2) 배경과 이유

군대 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이나 충기난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고,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의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군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특히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군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를 금지하고 있어, 군인의 인권보장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의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외부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함. 국회 군인권특위 역시 군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 내 설치, 군사법원 폐지 등의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음.

현재 2014년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권기본법」안(의안번호 1912764)이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임

3) 주요 내용

「군인권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은 시민의 일원으로 헌법과 국제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국가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군인의 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인인권보호관’을 임명, 군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4)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참여연대 정책자료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

발행일 2015. 10. 21

발행처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

담당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02-723-5302 pp@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